

##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### 전통예능분과 제12차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1. 12. 10. (금요일), 14:00~15:3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김영운(분과위원장), 박전열, 변미혜, 성애순, 원명(김종민), 유정숙, 윤중강, 임재원, 조남규(이상 9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- 1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
- 2 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## 【보고사항】

- 1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(2022~2026) 수립 보고
- 2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사항 보고

심 의 사 항

## 1.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

#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이도근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(‘21.8.13.)에서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이도근 보유자에 대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를 의결함에 따라,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(‘21.8.26.~9.28.)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: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
- 지정일: 1968.4.18.
- 전승자 현황: 보유자 1명, 전승교육사 6명(이수자 50명)
  - 보유자: 이도근(’02.2.5.인정)
  - 전승교육사: 정영배(’96.5.1.인정), 백정강(’01.11.30.인정), 손심심(’01.11.30.인정), 문종수(’01.11.30.인정), 이순규(’01.11.30.인정), 이춘실(’01.11.30.인정)

#### 2) 추진경과

-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이도근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신청서 제출(‘21.6.16.)
-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(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 / ‘21.8.13.)
  - (가결) 이도근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.

#### 3) 예고사항(관보 제20073호 / 2021.8.26. / 문화재청 공고 제2021-320호)

- 대상자: 이도근
  - 예고내용: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

지정명칭	구분	성명	기·예능	주소
동래야류	명예보유자 인정	이도근 (李道根)	차양반	부산 동래구

- 예고사유: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해당 종목의

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,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 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.

- 예고결과: 의견 접수 없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자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인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#### 마. 의결사항: 가결함(출석 9명, 가결 9명)

- 이도근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‘동래야류’ 명예보유자로 인정함.

## 2. 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#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1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: 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
- 지 정 일: 1985.2.1.
- 전승자 현황: 전승교육사 4명(이수자 25명)
  - 전승교육사: 박광순(’96.5.1.인정), 강정태(’01.10.18.), 김치선(’11.12.21.인정), 강민수(’11.12.21.인정)

#### 2) 추진경과

-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에 포함(’21.1월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 요청(’21.3월, 우리 청→보존회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(’21.6월, 보존회→우리 청)
- 조사지표 검토 등 조사자 사전회의(서면) 실시(’21.9.14.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(’21.10.27.)

#### 3) 조사개요

- 일 시: 2021. 10. 27.(수), 13:00~18:00
- 장 소: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(전남 진도군)
- 조 사 자: 관계전문가 4명
- 조사대상자(2명): 정남석, 조규수

- 조사내용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(단체종목)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
- 조사방법(“21.9.14. 조사자 사전회의 의결에 따름)
  - 전승기량, 교수능력 평가, 면담을 구분하여 조사
  - 지표별 평가방법
    - 전승기량 평가는 가상제놀이, 거사·사당놀이, 여흥 과장 실연
    - ‘해당종목의 이해도’, ‘전승의지’, ‘건강상태’는 면담을 통해 평가
    - ‘리더십 및 교수능력’은 조사대상자가 일반인 대상 강습하는 실연을 통해 평가
  - 조사지표 중 ‘평판(5점)’은 제외
  - 조사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, 배역은 당일 공지

#### 라. 검토의견

- ‘진도다시래기’ 종목의 전승여건 및 전승교육사의 역할 및 위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.

#### 마. 의결사항: 가결함(출석 9명, 가결 9명)

- 정남석, 조규수를 국가무형문화재 ‘진도다시래기’ 전승교육사로 인정함.

보 고 사 항

## 1.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(2022~2026) 수립 보고

### 가. 보고사항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(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라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,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입니다.

### 나. 추진경과

- (‘20년)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
- (‘21년)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 TF 구성·운영

### 다. 주요내용

- 계획기간: 2022년 ~ 2026년 / 5개년
- 성 격
  - 문화재보호법 제6조(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)에 근거한 법정계획
  -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
  - 시·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
### 라. 계획의 구성

- 비 전: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
- 목 표
  -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
  -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·상생
  -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
- 추진전략
  -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·전승
  -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
  -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
  - 미래를 여는 문화재 스마트 행정

### 마. 의결사항: 원안 접수(출석 9명, 접수 9명)

## 2.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사항 보고

### 가. 보고사항

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의식을 개선하고,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번호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### 나. 추진 경과

- ('21.2~3월) 문화재 전문가(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) 및 대국민 의견수렴
- ('21.3월)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
  - (단기) 공문서·보도자료·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번호 삭제
  - (장기) 지정번호 사용 제한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 부처 협의
- ('21.6월~) 문화재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
  -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(6~8월), 법제처 법안심사(8월~)
- ('21.6월~) 관계 부처 협의
  - 문체부(박물관·미술관 등), 교육부(교과서), 지자체(시도문화재 관련) 등
- ('21.10월)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

### 다. 주요 내용

- 문화재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  - 행정서식 등에서 지정번호 항목 삭제
- 홈페이지·간행물 등에서 지정번호 삭제
- 문화재 안내판 개선
  - 궁·능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통해 안내판에서 지정번호 삭제
- 문체부,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계속

### 라. 향후 계획

- ('21.11월) 문화재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동일명칭 문화재에 대한 표기 방법 고시

### 마. 의결사항: 원안 접수(출석 9명, 접수 9명)